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[별표 4]

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인정기준

○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필요한 경력기준

(단위: 년)

교육경력·연구실적 연수 / 직명	교육경력 연수	연구실적 연수	계
교수· 부교수·조교수	1	1	2

※ 교육경력 연수와 연구실적 연수는 서로 대체할 수 있다.

※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에 한하며, 같은 법 제17조 겸임교원 등(겸임교원, 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)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○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의 환산

구 분	경 력 내 용	환산인정율
교육경력	1.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로 주당 교육시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일 때. 다만,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병행시 비율에 따라 대체 인정할 수 있다. 가. 이론교육 : 주당 9시간 나. 실기교육 : 주당 15시간	100%
	2. 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전공과 부합되는 경우	50%
연구실적	1.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관하여 전임으로 연구한 실적	100%
	2. 국가 또는 공공단체,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 연구한 경력	100%
	3.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의 수학년수(2년)	100%